#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81

발의연월일: 2022. 9. 1.

발 의 자 : 용혜인 · 강민정 · 강은미

김남국 • 류호정 • 민형배

배진교 · 오영화 · 유미향

이은주 • 이탄희 • 장혜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원유, 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석유사업자, 은행 등 일부 산업 부문에 전례 없 는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에게는 심대한 고 통을 주고 있음. 한편으로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 가격의 하락 을 유도해왔으나 유류세 인하분의 40% 정도만이 가격에 반영되는 실 정임.

원자재 가격 급등, 초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계 공통의 경제위기에 대처하여 중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등은 석유 사업 부문에 대해 소위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였고,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권에서도 횡재세 법안 발의 및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에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기 속에서 경영 혁신, 혁신 투자 등 법인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

한 정상이익을 월등히 넘어서는 초과이득을 향유하는 석유사업자 및 은행들에 대해 한시적 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 그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의 고통을 경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고 통 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전례를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해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하고, 세율을 과세표준의 50%로 정함(안 제55조의3제1항 및 제2항)

사업연도 2022년의 과세표준

: 2022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90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사업연도 2023년의 과세표준

: 2023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85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사업연도 2024년의 과세표준

: 2024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80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 득금액

나. 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고, 초과이득세가 기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액수는 없는 것으로 하며, 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다.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초과이득세의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득공유기금을 설치함(안 제12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라.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일로부터 2 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71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석유정제업자·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각 사업연도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초과이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초과이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에 제3항에 따른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세액을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소득금액은 석유의 수출입,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 유관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으로 한정한다.

#### 사업연도 2022년의 과세표준

: 2022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90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 사업연도 2023년의 과세표준

: 2023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85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 사업연도 2024년의 과세표준

: 2024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80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적용을 받는 납세의무자가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해에는 그 변동이 있는 해를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정 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 ③ 초과이득 산출세액에서 이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 상당액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법 제5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div$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 X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의 법인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에 제1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2조의3(초과이득공유기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에너지 및 금융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과이득공유기금을 설치한다.
  - ② 초과이득공유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서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기금의 운용・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자·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55조의3 및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제55조(세율) ①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 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제55조의2에 따른 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액-----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 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 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5조의3(석유정제업자 · 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 중 「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한한 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 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각 사업연도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초과이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초과이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에 제3항에 따른 법 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세액 을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 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 정제업자의 소득금액은 석유의 수출입,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 유 관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으로 한정한다.

사업연도 2022년의 과세표준 :2022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90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 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사업연도 2023년의 과세표준 :2023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85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 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사업연도 2024년의 과세표준 :2024년의 소득금액 × 100분의 80 -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 지 5개 연도 평균 소득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적용을 받는 납세의무자가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해에는 그 변동이 있는 해를 제외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따라 적정 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③ 초과이득 산출세액에서 이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 상당액을 다음의 산

식에 따라 공제한다.

 (법 제5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 X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 과이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제1 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2조의3(초과이득공유기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
  하여 초과이득공유기금을 설치
  한다.
  - ② 초과이득공유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서 제55조의

<u><신 설></u>

 3에 따른 초과이득에 대한 법

 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